



업무계획

전기용품 안전인증 기준정비



제품안전정책과 공업연구관 윤기환
02)509-7236~7237 kwyun@mocie.go.kr

1. 추진개요

기술표준원은 IEC 국제표준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으로 보완·정비하여,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고유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기준 세부적용범위도 명확하게 하여 제조업체가 이해하기 쉬운 안전기준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우리나라는, 냉온수기·발육조와 같이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247개 품목의 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각국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용품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안전

인증기관에서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현지공장심사를 통해서 제조자가 안전품질을 유지할 제조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인증시험시 합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바로 신청 제품에 적용되는 해당 안전기준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74년도부터 운영해 오던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 제도를 '00.7월에 민간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하면서, 전기용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폐지하고 IEC 국제표준을 안전기준으로 채택하여 '01.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국제표준은 세계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별 문화·환경의 차이점이 반영되지 않은 규격이므로, 우리나라 고유품목 특성 및 환경 등을 반영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만 유통을 허용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짧은 기간(1~2년)에 IEC 국제표준을 우리나라 안전기준으로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고지대가 발생되고,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사용습관·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국제기준만으로는 안전사고의 방지가 미흡한 경우 등이 발생되어왔다.

예를 들어, 전기압력솥은 품목특성이 일치하는 국제규격이 없어 유사품목의 국제기준을 적용하면서, 폭발방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흡하여 '04년도에 별도의 압력안전장치 등에 대한 규정을 안전기준에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고, 발육조의 경우에는 국제규격에서 진동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한 기준만을 규정하고있으므로, 진동기능이 없고 물을 내우는 기능만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우리나라 독자 안전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안에 제정고시를 거쳐 '07.3월부터 안전인증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금번 안전기준의 정비는, 국제표준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해당 국제규격이 없어 유사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품은 품목마다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두가지 이상의 부품이 결합되거나 여러가지의 기능제품은 안전기준 보완 및 세부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인증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06.7월말까지 정밀 검토하고,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품목부터 공청회 등

을 거쳐 '07년까지 현행 안전기준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3. 기대효과

금번 안전기준의 체계적 정비로, 최근 새로이 출시되고 있는 웰빙 전기용품 등 신개발제품들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되고, 기존 제품의 안전기준 세부적용 범위도 명확하게 됨에 따라, 연간 약 1천여건의 안전인증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고, 안전사고지대가 해소되는 등의 전기용품 안전성 제고가 기대된다.

<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개요 >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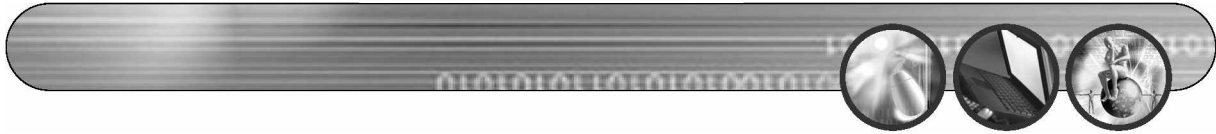
- 근거법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1974년 제정)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을 제조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 대상품목 : 247개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전기기기류 132 품목
- 전기톱, 드라이버 등 전동공구 17 품목
- TV, 오디오 등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26 품목
- 모니터, 복사기 등 정보·사무기기 9 품목
- 형광등기구, 램프 등 조명기기 18 품목
- 전선, 스위치 등 전선 및 전기부품 45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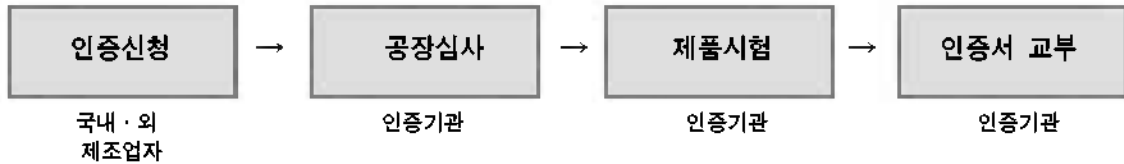
○안전인증기관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 군포, www.keetire.kr)

- 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 www.ktlre.kr)
- 한국전자파연구원(경기 용인, www.erire.kr)

○ 안전인증 처리절차 및 인증방법



- 안전인증 처리기간 : 45일 이내
- 인증방법(신청서류 : 제품설명서, 전기회로도, 부품명세표)
- 공장심사 : 제조·검사설비 등의 기술능력 확인
- 제품시험 : 해당 안전기준에 의한 적합성평가

기관 모두 지사가 설치되어 있어 현지파견 직원이 공장심사 실시)

○ 사후관리

- 정기검사 : 연1회 이상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안전인증기관)
- 시판품 조사 : 시중 유통중인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정부)
- 불법전기용품조사 : 시·도지사 및 한국전기계품안전협회
- 시중 유통제품, 인터넷 쇼핑몰, 세관 통관자료에 의한 조사 **표준**

※ 외국의 제조자에 대한 공장심사는 안전인증기관과 공장심사 대행계약을 맺은 외국의 인증기관(23개국 31개 기관)이 실시

- 공장심사 대행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은 국가는 인증기관이 현지 출장심사(중국은 3개 인증

○ 제도 운영체계

